

# 2016 노무관리 Monthly Review

December  
12

## 「2017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제도」 안내 (2편)

###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관련 분야

#### ○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

구 분	의무고용률	
	2016년	2017년 ~ 2018년
민간기업	2.7%	2.9%
공공부문	3.0%	3.2%

#### ○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

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	2016년	2017년
	부담액(원)	부담액(원)
3/4 이상	757,000	812,000
1/2 이상	832,700	860,720
1/4 이상	908,400	974,400
1/4 미만	984,100	1,136,800
미고용	1,260,270	1,352,230

#### < 참 고 >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

- ▶ 50명 이상 공공기관·민간기업 사업주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미 준수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
  - (장애인 고용부담금)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 및 공공부문 중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
  -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

#### ○ 사업주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부 우대지원\* (2017.6.28. 시행)

- (前) 기간제, 단시간, 파견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할 경우 정부의 우대지원 (시행령 규정)
  - \* 재직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자체 훈련시설 또는 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에서 교육비용 등을 지원
- (後) 우대지원 규정 시행령 ⇒ 법률로 상향
  - 우대지원 대상에 고령자 및 준고령자 추가

#### ○ 두 번째 육아휴직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(2017년 1월 시행)

- (前)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,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(상한액 150만원)
- (後) 상한액 150만원 ⇒ 200만원

○ 출산전후휴가 및 유·사산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(2017년 1월 시행)

- (前)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의 상·하한액
  - 상한액 : 월 135만원
  - 하한액 :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산출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액
- (後) 상한액 규정 변경 : 휴가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, 휴가급여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, 물가상승률,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

기 간	고시금액
2017년 ~ 2019년	월 150만원
2020년 ~ 2022년	월 180만원
2023년	월 210만원

※ 향후 실제고시 내용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

○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(2017년 1월 시행)

구 분	지원금			
	우선지원 대상기업*		대규모기업	
	전	후	전	후
육아휴직부여 지원금	월 20만원	월 30만원	-1,000인 미만 : 월 10만원 -1,000인 이상 : 월 5만원	지원 폐지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	월 30만원	월 20만원	월 20만원	월 10만원

※ 중소기업 및 산업별 일정기준 이하 상시근로자수 사용기업 (제조업 500명 이하,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)

국회 계류중인 주요 법안

○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관련,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)

- (현 행)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
  -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, 일급금액, 주급금액,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
- (개정안)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개념을 명시
  -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
  - 다만,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,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제외

○ 근로시간 단축 (신설규정,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)

-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기업 규모별 4단계 시행

규 모	시 행 일
공공기관, 상시 1000명 이상	2017.1.1
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	2018.1.1
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	2019.1.1
상시 100명 미만	2020.1.1

※ 노사 합의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

※ 휴일근로 할증률 :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%,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%

서체 파일 저작권으로 머리 아픈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하여, '중소기업 전용서체' 탄생!

중소기업중앙회는 더 가까운 곳에서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 한마음체 (고딕·명조)를 배포합니다. 저작권 고민 없이! 광고, 상표, 인쇄물, 현수막, 홈페이지 등 마음에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확인 [www.kbiz.or.kr](http://www.kbiz.or.kr) 문의 02)2124-3093